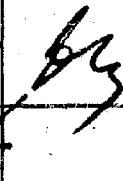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8 / 전송 731-6562
 처리부서: 법무담당관 (서울본청 3층) 담당: 김철수

문서번호 법무 11010-390
 시행일자 1996. 3. 8.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 담당관					
법제계장	호				
기안	김철수	→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상운영규정폐지규정 발령

1.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상운영규정폐지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훈령안 1부. 끝.

(제2안)

수신 공보담당관

훈령제 832 호

제목 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상운영규정폐지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

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 832 호 2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 3 안)

수신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참조 교육운영과장

제목 훈령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상운영규정폐지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가. 발령예정일 : 1996. 3. 15.

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 832 호 (생략).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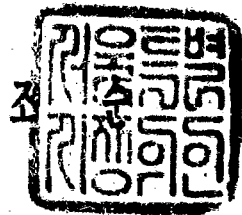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운영규정폐지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6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상운영규정폐지규정안

1. 폐지사유 및 주요골자

당초 서울시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시상기금을
내무부 훈령에 의거 운영토록 공무원 교육시상기금운영규정 (내무부훈령 1131호,
'95. 2. 25)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의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상
운영규정(서울특별시훈령제787호, '94. 1. 25)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규정 (내무부훈령 제1131호)
-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상운영규정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상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